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대학설립·운영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교육개혁 및 교육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규정 일괄 정비의 일환으로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등관련 전문대학원(이하 “경전원”) 관련 조항(제22조의2, 제22조의3)을 삭제 하면서 인용 법령 정비 및 대학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 삭제 추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교원, 교사 및 교과목 개설 등에 관한 별도 기준 관련 조문 삭제(현행 제2조의5제1항 등 삭제)
- 나.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에 관한 특례 제도 관련 조문 삭제(현행 제2조의5제4항 등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12. ~ 21.)

대통령령 제 호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5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조의5(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</u> <u>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) ①대</u> <u>학(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. 이</u> <u>하 이 조에서 같다)이 「고등교</u> <u>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제1항</u> <u>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</u> <u>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</u> <u>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</u> <u>한다.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</u> <u>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</u> <u>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</u> <u>다.</u> <u>1.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</u> <u>25로 나눈 수의 교원. 이 경우</u> <u>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</u> <u>호를 따르도록 하되, 교원의 3</u> <u>분의 1은 「고등교육법 시행</u> <u>령」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</u> <u>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</u> <u>등(이하 “겸임교원등”이라 한</u> <u>다)으로 할 수 있다.</u> <u>2.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</u> <u>사.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</u> <u>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</u>	<u><삭 제></u>

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.

②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·제2항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

지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

2.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

⑤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「민법」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⑥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

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⑦ 삭제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50 (044) 203 - 6854